

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218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1. 10. 31.
제안자 :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주문

-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1년 2월 28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 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.

2. 제안이유

-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,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정책전반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가 됨에 따라 우리시의 성별통계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여성 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 2월 28일부터 7명의 위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,
- 그 동안 총 8회의 회의와 각 1회의 워크샵과 우수사례지역 견학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거두웠음.
- 그러나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12년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, 여성특위 활동의 결과물로써 추진예정인 자치법규 내 성차별 조항 검토,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청회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1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.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

-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-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

- 제51조의2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